

붙임 2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9. 3. 7



금융위원회



목 차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2019년 역점 추진과제	7
①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② 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③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 신규 발굴 과제	12
①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②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IV.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

【별첨】 2019년 주요 입법과제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추진성과

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성장 제약요인 해소
 - * '18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13년(5.7%) 이후 최저수준인 5.8%
 -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 보유세대의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구입 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18.9월)
 -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18.10월)으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으로 경제활동 복귀 유도
 -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로 최대 1.1조원(293만명)의 이자부담 경감
 - ** '17년 이후 총 34.8조원(349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완료

②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

- 새로운 참가자가 진입하여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월)
-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34% 지분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인터넷전문은행법」, '18.9월 제정)
-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금융혁신지원특별법」, '18.12월 제정)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
 - *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억원) : ('16년) 174 → ('17년) 280 → ('18년) 301

③ 서민층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국민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연장('18년 → '21년)하고 가입대상* 확대
 - *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 추가
- ※ ISA 가입금액은 꾸준한 증가 추세 : ('17.9월) 3.4조원 → ('18년말) 5.6조원
- 서민층이 과도한 금리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18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간 약 7조원(58만명) 공급
 - 아울러,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도 대폭 확대
 - * 공급실적 비교 : ('16.7월 ~ '17.6월) 2.8조원 → ('17.7월 ~ '18.6월) 3.4조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39 → 46개소) 등 원스톱 종합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민금융 수요자의 편의 확대
 - * 서민금융 상담실적 비교 : ('17년) 90만건 → ('18년) 97.7만건

2

아쉬운 점

: 대국민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 금융회사가 과거 관행·시스템에 여전히 안주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이 아직 시장에 착근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상존
- 또한,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고령층 등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
-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규제 재정립 등을 통해 금융업의 자율성·역동성을 높여갈 시점
-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입법지연*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완비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 (예) 금융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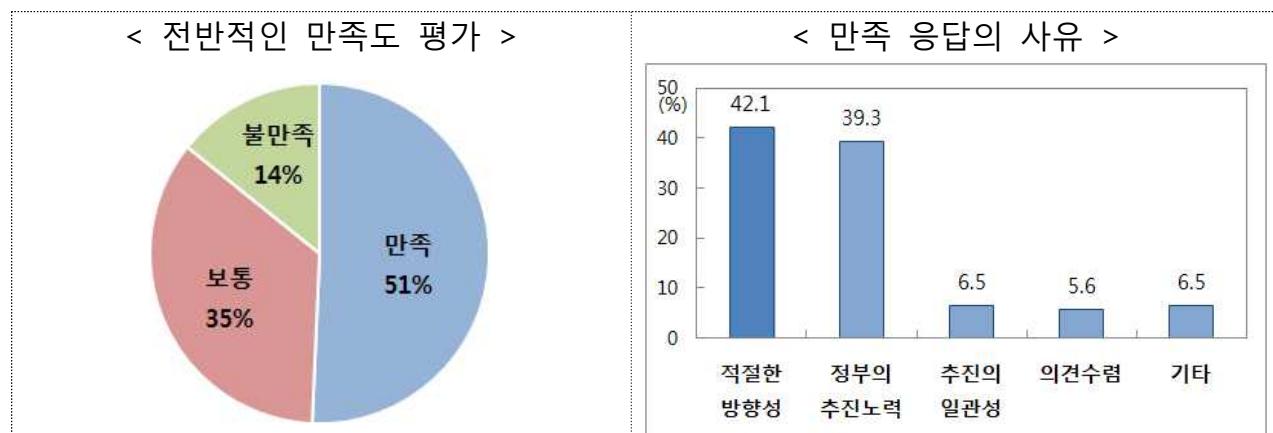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 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갤럽)를 통해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보완사항 등 점검

1. 설문조사 결과 : 전반적 평가

□ 발표된 금융정책 과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다수(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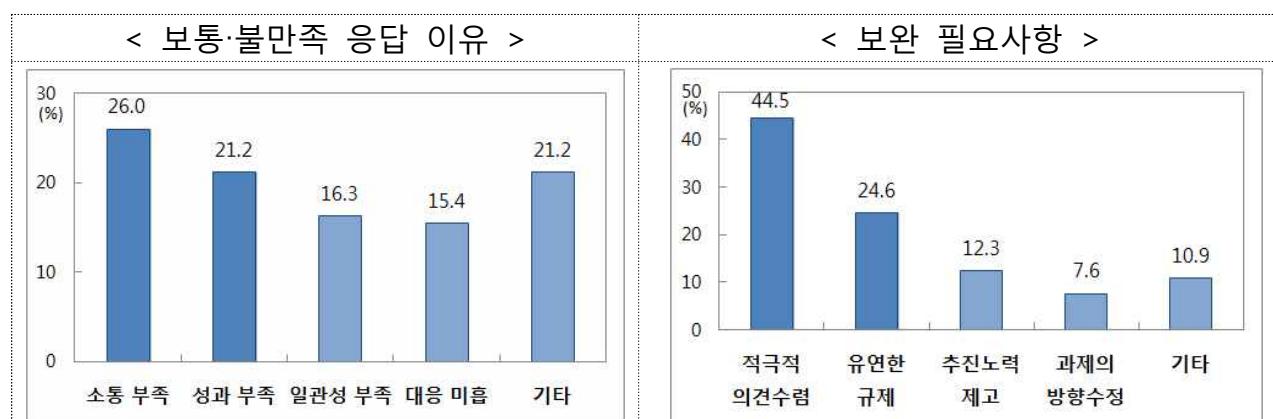
- 주된 만족의 이유로는 정책방향 설정의 적절성(42.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39.3%), 추진 일관성(6.5%) 등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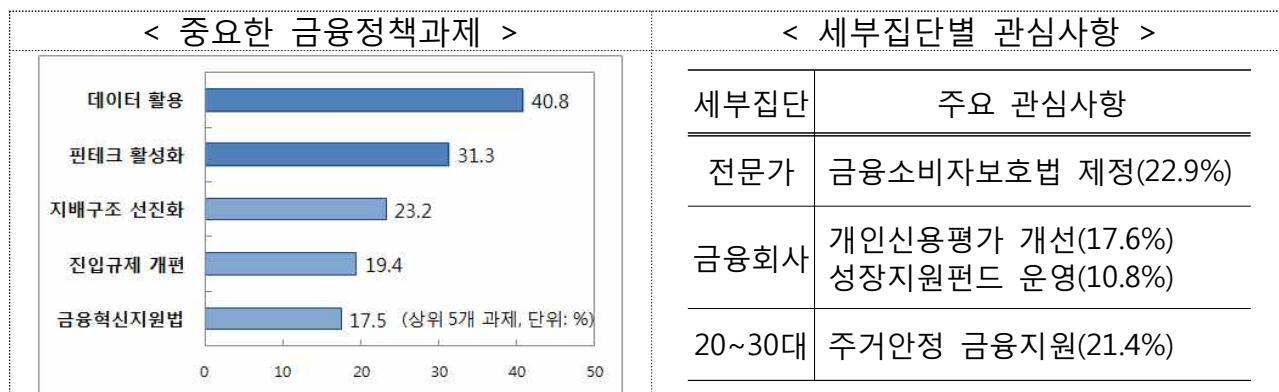
□ 반면, 불만족·보통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 부족(21.2%), 소통·의견수렴 미흡(26.0%) 등이 지적

- 향후 금융정책 추진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적극적 의견 수렴(44.5%), 유연한 금융규제체계 마련(24.6%) 등이 제기

⇒ '19년 금융정책방향 검토 과정에서 금융협회, 금발심, 연구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중점



- 주요한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빅데이터(40.8%), 펀테크(31.3%)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23.2%) 등
- 다른 집단에 비해 금융전문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큰 관심
- 응답자 연령별로 20~30대 청년층은 주거안정 지원에 높은 관심



2.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 집단별 평가

- (소비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으로 저하된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적 가시화 필요
 -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자 보상 등 사후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
 - 포용적 금융정책 과제가 지나치게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 제기 → 포용적 금융의 외연확대 검토 필요
- (금융전문가)** 금융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등을 고려해 지금은 금융산업의 경쟁력·부가가치 제고가 중요한 시기
 - 펀테크·데이터경제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시장의 자율성·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는 평가
 -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노력 필요성도 강조
- (금융회사)**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업에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규제체계 정립 필요
 -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있는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우려로 정책방향과 실제 감독간에 괴리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경제·금융여건) 저성장·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투자 위축,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
※ 경제의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해서는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구조개선 추진과 함께, 신산업·혁신분야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
-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
- (정책여건) 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산, 금융부문 공정경제 확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 전향적인 정책보완·추진* 필요
 - * 특히,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각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 구체성을 강화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집중 점검·관리할 필요성 제기

2

업무추진 방향

- ◇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금융신뢰 확산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혁신금융)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벤처·혁신부문 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불필요한 금융규제 혁파
- (신뢰금융) 금융소비자를 가장 우선하는 금융시스템을 확고히 정착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을 적극 발굴·개선
 -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등 금융분야 쇄신을 위한 입법과제도 조속히 완료
- (금융안정)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강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주력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전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방향

- ▷ 경제활력 뒷받침
- ▷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 ▷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주
요
과
제

혁신 금융

[경제활력 뒷받침]

-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 혁신·중소기업 자금지원
- ▷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 ▷ 창업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 금융혁신]

- ▷ 새로운 참가자 진입
- ▷ 핀테크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 ▷ 금융규제 혁신
-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신뢰 금융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

- ▷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 ▷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공정성 · 투명성 강화]

- ▷ 공정경제 입법 추진
- ▷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 ▷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정대응
- ▷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금융 안정

- ▷ 금융안정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비은행권 거시건전성, 부동산 그림자금융 등)
- ▷ 가계부채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①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1) 개요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활성화 촉진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6조원 유동성 공급
 - * [조선·기자재] ①신·기보 제작금융 등(3천억원), ②정책금융 대출·보증 만기연장(1조원)
 - [자동차부품] ①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1조원), ②신·기보 우대보증(1조원) 등
-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1월)

②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

- (대출) 부동산담보, 과거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 구축
- (보증) 위험공유·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신규보증 여력을 집중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차별화

③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 5년간 총 190조원 정책금융 공급 (창업자금: 기은 100조원, 신보 90조원 등)
- 국내 최대규모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공간 조성을 신속히 추진 → 금년 4분기 중 부분개소 목표
 - * 청년기업 투자·보증 프로그램 마련, 청년·대학·기업 창업네트워크 구성 및 혁신 기술 컨설팅·교육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청년혁신타운 전담조직 구성, 1월)

※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 등은 후속대책 발표 예정

② 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1] 개요

-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全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시장불안 등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방안 준비
 - * 특히, 비은행권(금융기관간 거래·펀드·파생상품 등) 건전성, 부동산 그림자 금융 등 규모나 복잡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문을 면밀히 점검·대응
-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

❶ (대응체계) 금융시장 상시 모니터링,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점검·분석 및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상시)

* ①금융리스크 점검회의(위험요인 모니터링) → ②금융상황 점검회의(총괄 대응)

-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권 전반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 현실화시 충격 및 복원력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금융불안에 대비한 시장안정조치* 등 충분한 대응방안 준비

* (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발행, 회사채 인수물량 확대 등

❷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급성장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한 규제·관리체계 구축

* ①익일물에 편중된 RP 거래구조 개선, ②대규모 환매요청 가능성이 높은 MMF 유형에 대해 시가평가 도입, ③파생결합증권(ELS 등) 기초자산 편중완화 유도 등

❸ (부동산 그림자금융) 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하여 금융권 차원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발생 및 전이경로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권별·상품별로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 (예) 차입형 부동산신탁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② 가계부채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❶ (가계부채 관리강화)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

- 은행권('18.10월)에 이어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2분기)
-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추가 자본적립 의무부과)

❷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강화(3월)

- *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 추진

❸ (취약차주 안전망) 주담대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 * ①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 개발, ②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③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

③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금융회사 기업신용위험 진단의 신뢰성·예측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 (2분기)

- * 최근 실적자료 활용의무화, 대상선정시 매출총순실·단기상환부담 고려 등
- ** 시장성차입 의존도 감안,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법원 회생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상황별 역할 재편방안 등 검토

○ 부실채권(NPL) 시장 정비, 기업구조혁신 펀드 확대운용(1→1.5조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

- NPL시장의 민간 수요기반 확충*, 기업회생채권 중개 활성화,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 추진(4분기)

- * 시장 성숙도를 고려하여 유암코·캠코의 역할 재정립 등 검토

-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 '부채투자' 방식의 자금지원 및 공동투자(시중 PEF, 유암코 등) 병행(4분기)

[3]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 개요

-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중 대응 등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를 철폐
-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1] 금융분야 공정경제 입법 조속 추진 등 기반 마련

- (금융그룹감독)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과 함께, 그간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 병행
 - * '18.7월부터 7개 금융그룹 시범운영 종(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 금융그룹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 규제차익 해소*, 금융 그룹 유형별(금융지주, 복합금융 등) 감독수준 정비방안 등 검토
 - * (예)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자본기준 자회사 연결범위 등(개별업권 법규 개정사항)
 - 입법과 연계하여, 금융그룹 자본규제 세부기준 마련 추진
- (금융회사 지배구조)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정부안)」 개정에 주력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 강화

-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
 - *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하여 긴급·중대사건 신속 처리
-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 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③ 불법사금융·금융사기에 엄정 대응

- 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 금융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 조성
 - * 권역별·행위별 규제 →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여 대출중개 행위를 통일적으로 규율
 - 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출·보험사기 등 예방 강화
 - * (예) 신정원에 대출신청 정보 집중을 통해 동시대출 방지, 빅데이터 가공·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도입
-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 검토
 - * (예) 법정상한인 24% 초과 대출시 금리전액 무효화(현재 24%초과분만 무효)
 - **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하여 권리구제 진행
 -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5월경),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등 추진

④ 주총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 주주들이 기업성과,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상법(법무부 협업) 및 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 * ①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②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전) 연장, ③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
-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연중)
 - * 금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
 - 아울러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 추진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자연공시^{*}한 기업의 명단 공개,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있고 성실한 정보전달 유도
 - * (예) 명절·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

①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 개요

-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낮은 수준
 -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19.1월) :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는다(43.9%),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쓰지 않는다(73.9%) 등
- 특히, 보험약관,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분야 등에서 불편 제기
-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은 상당 부분 이행된 만큼, 청년·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포용적 금융 확대 요구도 제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Top-down)과 함께, 일상 속 금융 관행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 핀셋형(Bottom-up) 대응 필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판매행위 원칙*을 전금융상품으로 확대, 불완전 판매를 예방,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 **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보험·투자자문 → 대출 등), 일반금융 소비자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 입법추진과 병행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 상품설명서를 ‘쉽게, 짧게, 읽기 편하게’ 전면 개편
 -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등) 권리제고를 위해 현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판매가 급증한 상품 등에 대한 점검·조치 강화
 - * (예) 지정인(가족 등)에게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은행영업점 Help-Bell 설치
 - 연중 총 100만명 소비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추진

②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① (보험)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 개선

-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 개선, 사업비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
-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 등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보험신뢰도 제고
-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

* ①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 ②약관평가시 다수 민원제기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중 확대(10 → 50%) 등

② (대출금리)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리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당초 취지에 맞게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차질없이 도입(7월)

③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제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개선,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관계기관 합동 TF구성·운영 →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에 산재된 채권추심업자 규율체계 개선 등 추진

④ (금융편의 확대)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카드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 ①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일괄 개시(19.下), ②은행-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개시('20.上) ③‘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변경) 서비스 개시('19년 조회, '20년 해지·변경)

- 아울러,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금리·한도 등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

① (중·저신용자)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 대상 정책금융상품 신설(연 1조원 규모)

- 중신용자에게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해 연중 7.9조원 공급

②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해 연중 총 2.6조원* 금융지원

* ①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기은, 1.8조원, 1.31일~), ②카드대출 연계대출(기은, 0.2조원, 1.31일~), ③신·기보 특례보증(0.6조원, 1분기)

- 연매출 5~30억원 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신규 적용(1월말~)

* [연매출 5~10억원] 신용 1.4%, 체크 1.1%, [10~30억원] 신용 1.6%, 체크 1.3%

-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채무조정 + 재기자금지원(미소금융 등)'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3분기)

③ (고령층)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 추진

- 현재 60세 이상인가입연령을 하향하고,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
-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를 허용하여,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

④ (청년) 청년·대학생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 총 1.1조원 공급

* 주금공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①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 ②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③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 지원

④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18년 1,900억원→'19년 2,400억원 목표(대출 860억원, 보증 1,150억원, 투자 420억원)

- 상호금융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신협이 지역 사회적기업에 직접 출자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신협법 개정)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체계 및 사회적금융 관련 DB* 구축(3분기)

* 필요자금의 원활한 중개를 유도하고 중복·부실지원 소지를 제거

②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1) 개요

-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

* 부가가치 중 금융업 비중(%): ('02년) 7.2 → ('16년) 5.4 < 미국 6.5, 영국 6.6, 일본 6.1

- 금융업이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약화 및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반면, 최근 해외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주자도 핀테크, 데이터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중

→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입·영업규제, 나아가 금융당국 행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새로운 도전자의 진입으로 경쟁과 혁신 촉진

- 금년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 허용(예비인가)

* 보험회사(1개, 2월) → 부동산신탁회사(3개, 3월) →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5월)

- 금융투자·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2분기) 후 인가 순차진행

- 전문·특화 금융회사 위주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 완화 및 인가체계 정비^{*}(보험업법 등 개정)

* (예)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 : 50~300억원 → 10~30억원, 탄력적 사업구조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업무추가(변경인가)는 등록으로 완화 등

② 핀테크 혁신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 ① (규제 샌드박스) 수요자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법률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도록 차질없이 준비

-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방안 마련

* (예) 핀테크 기업에 금융업의 단위업무에 한해 인·허가를 부여하거나(인허가 단위 세분화), 영업이 소규모인 경우 대폭 완화된 진입요건 적용 등

② (금융 데이터경제)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신용정보법 개정)

-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정보(세금·사회보험료 납부정보 등) 및 다양한 금융 정보(대부업·카드정보 등)의 금융권 공유 확대 추진

③ (간편결제 활성화) 펀테크 사업자, 금융회사 등이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 혁신

- * ①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자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②이용자 인센티브 부여(세제혜택, 대중교통 및 해외결제 지원 등)

④ (금융결제업 개편)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2분기)

- * (예)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 수행(지급지시서비스업, PISP), 결제계좌 관리(종합지급결제업) 등

⑤ (P2P대출)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 *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보호,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 허용

⑥ (낡은규제 혁파) 금융회사의 펀테크 출자제약 완화, 인슈테크 등 업권별 펀테크 고도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2분기)

③ 금융산업·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

① (영업 자율성 확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상품·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

-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재정립

- * (예) ①카드사 컨설팅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②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비대면 방식 허용, ③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등

- 과도한 사전규제는 폐지 → ‘원칙 중심·사후규제 강화’로 전환

- * (예) 법령에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준수토록 개선

- 금융권 업무위탁 규제를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부수·겸영업무를 폭넓게 인정(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규제개선** 등 검토

- * 코스피 200 옵션 : (현행) 분기기준 만기 결제 → (개선) 주간기준 결제일 도입
국채금리 선물 : (현행) 3년·5년·10년물 → (개선) 3년·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 도입
- ** 사전교육(2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

-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 인센티브를 확대

③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

- *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

④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 개선

- (그림자규제 정비)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암묵적 규제·개입 등을 일괄 정비(2분기)

- * 금융당국 행정지도(39 건), 금융협회 모범규준(280여 건)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법규화·폐지 등 추진

- (검사·제재 혁신)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 - 개선유도' 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경감

- * 금융소비자 보호(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준법경영, 금융사고 예방) 등

- 신종 조치수단(준법교육 대체 등)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고의·중과실 제외)은 면책·감경 적극 고려

⑤ 금융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정책 자금(연중 7.1조원), 은행권 일자리펀드(3년간 8천억원) 지원

-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2분기)하여 인센티브* 제공

- * (예) 업권별 실적평가 후 경영공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등

-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전문인력 공급*을 한시적으로 확대

- * [공인회계사] '19년 최소선발인원 850명 → 1,000명, [보험계리사] 5년간 총 500명 추가선발

참고2

5대 추진과제 20개 핵심과제(58개 세부과제) 개요

<5대 추진과제>

경제활력 뒷받침

<20개 핵심과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혁신·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 개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모험자본 공급처변 확대

<58개 세부과제>

조선·자동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설투자·사업재편 금융지원 프로그램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 구축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차별화
유망 스타트업 등 창업자금 지원
마포 청년혁신타운 운영
소액자금조달 활성화
개인전문투자자요건·사모펀드 규제완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새로운 도전자 진입으로
경쟁·혁신 촉진

핀테크 혁신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금융산업·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 개선

금융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금융투자·중소금융권 경쟁도평가

진입요건 완화 및 인가체계 정비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 데이터경제 관련 규제정비

간편결제 활성화

금융결제업 개편

P2P대출의 건전한 육성·발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발굴·개선

금융업 상품·영업규제 개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

그림자규제 일괄정비

검사제재 혁신 추진

고용우수기업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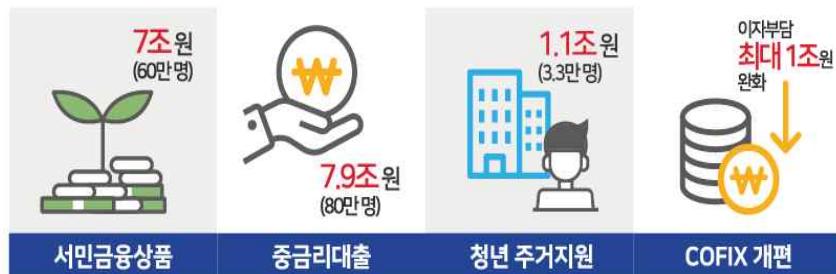
금융회사 일자리창출 기여도 평가

금융전문인력 공급확대

<p>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p>	<p>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p> <p>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p> <p>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p> <p>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p>	<p>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p> <p>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p> <p>보험 사업비·수수료·약관 개선</p> <p>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p> <p>채권추심 제도 개선</p> <p>자동납부변경 시스템 확대 등</p> <p>저신용층 대상 정책금융상품 신설</p> <p>중금리대출 활성화</p> <p>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p> <p>주택연금 활성화</p> <p>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p> <p>사회적경제기업 자금공급 확대</p> <p>사회적금융 관련 DB 구축</p>
<p>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p>	<p>금융분야 공정경제 입법 조속 추진</p> <p>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제재 강화</p> <p>불법사금융·금융사기에 엄정 대응</p> <p>공시품질 제고 등으로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p>	<p>금융그룹감독체계 법·제도 정비</p> <p>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p> <p>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 마련</p> <p>과징금 제재 신설 추진</p> <p>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 정비</p> <p>불법사금융 제재강화 및 금융당국 채무자대리제도 도입</p> <p>대포통장 양수도 처벌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p> <p>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기반 마련</p> <p>5%룰 개선 등 스튜어드십 활동지원</p> <p>불리한 정보 자연공시 방지</p>
<p>확고한 금융안정 유지</p>	<p>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p> <p>가계부채의 체계적·안정적 관리</p> <p>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p>	<p>상시 모니터링·비상대응체계 강화</p> <p>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p> <p>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p> <p>제2금융권 DSR 도입</p> <p>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p> <p>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p> <p>취약차주 안전장치 마련</p> <p>신용위험평가 기준 개선 및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p> <p>부실채권(NPL) 시장 정비</p> <p>기업구조혁신 펀드 확대운용</p>

IV.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기존 주력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과 거시금융안정



법안명 (추진현황)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정부안) * 법안소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전금융상품 및 판매채널에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소비자 선택권 및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도입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 도입
P2P대출 관련 법안 (민병두의원 외 4간) * 법안소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P2P대출 및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 마련 투자정보 제공, 투자자 재산권 보호, 과잉대출·추심 금지 등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김병욱의원) * 정무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명정보 개념도입 등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マイ데이터산업, 개인사업자 CB, 비금융전문 CB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선진화 정보활용 동의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단순화(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하고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등을 통해 정보보호 내실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제) (박선숙·이학영의원) * 정무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대상 지정 및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그룹 자본적정성 등 금융그룹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룹별 위험관리실태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도입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부안) * 정무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내실화하고, 금융권 CEO 선임 절차 투명성 강화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권 고액연봉임원 보수공시 강화
자본시장법 (김병욱의원) * 정무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여 규제완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 개입 최소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 → '100인 이하'로 확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윤경의원) * 정무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
금융거래지표법(제) (정부안) * 정무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규범에 따라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이 관리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지표 중에서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중요지표) 및 산출기관을 금융위가 지정 중요지표가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기관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공시 등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행위준칙 부과